

서울새활용플라자 새활용(업사이클) 공간조성 사업

협 상 서

(재)서울디자인재단과 (주)지누디자인 컨소시엄은 「서울새활용플라자 새활용(업사이클) 공간조성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43조에 의한 협상을 이행하고, 협상결과 첨부된 협약내용을 (주)지누디자인 컨소시엄이 이행하며, 협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이 성사되지 않음에 합의한다. 본 협약서의 내용은 용역계약 특수조건으로 간주하여 과업범위에 포함한다.

- 첨부: 1. 과업지시서 1부. 끝.
2. 실행계획서(실행도면) 1부. 끝.

2017. 11. 09

발주기관 (재)서울디자인재단
대표이사 이 근 (인)

용역대상자 (주)지누디자인 (대표사)
대표이사 박진우 (인)

서울새활용플라자 새활용(업사이클) 공간조성 사업

협 상 내 용

1. 사업내용

가. 계약의 체결과 이행 범위

- 「서울새활용플라자 새활용(업사이클) 공간조성 사업」의 계약체결과 이행범위는 본 협상서(협상내용)와 과업지시서, 실행계획서(실행도면) 등 모두를 포함한다.
- 과업지시서와 실행계획서는 협상개요, 주요이슈 및 협상내용, 협상전후 과업범위 비교, 협상안의 보완사항과 추가 제안사항 등을 포함한다.

나. 기획 및 실행안

- 사업자는 계약 전 협상을 통해 조정된 실행계획서를 수정·보완하여 제출하고 이에 따른 세부 산출내역서를 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재단에 의해 승인된 최종 실행계획서와 세부 산출내역서에 따라 사업 실행에 임하여야 하며 실행 전 과정에 걸쳐 변경사항 발생 시 반드시 사전에 재단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다. 예산

- 사업자는 재단에 제출한 세부 산출내역서의 내용을 준수하며 사업비 집행에 대한 책임은 사업자에게 있다.
- 사업자는 제안사업비 **금90,000,000원(금구천만원)**범위에서 과업을 이행한다.
- 예산변경은 사업추진 시 상호 협의하에 비목 간 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 변경계약을 체결하여 변경할 수 있다.

라. 투입인력

- 사업자의 인력투입에 있어,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 과업지시서, 실행계획서를 기준으로 하여 적격자로 하여금 업무를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 본 계약에 의거한 사업운영 시 참여인력 투입 및 변경은 사업자의 판단에 따라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단, 계약시점의 투입인력 등급과 동일한 적격자로 대처함에 한하며 투입인력 중도 변경 시 재단에 사전 보고한다.
- 재단은 운영상 사업자가 투입한 인력으로 인하여 업무상 문제가 발생할 경우 사업자에게 이를 통보하고 사업자는 이를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본 계약 이행을 위하여 투입한 인력(일용직 포함)에 관련된 문제에 대하여 단독으로 책임을 지며 고용관계로 인하여 재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도록 노력한다. 단독책임의 범위는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기타 고용관계에 따른 법령에 규정된 제반사항에 대한 책임을 의미한다.

마. 일정관리

- 사업자는 실행계획서를 기준으로 하여 일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세부 일정에 변경이 생기는 경우에는 사전에 재단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재단은 사업자가 사업기간 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이행을 지체하거나 사업자의 과실로 인하여 실행계획서 상 합의한 주요 일정 등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지방계약법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부과할 수 있다.

2. 사업관리

가. 사업비 정산

- 사업자는 사업비 정산에 따른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산보고서에는 인건비 지급명세서, 세금계산서 등 관련 증빙 서류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 재단은 사업자의 사업비 부정사용 및 과오사용에 대하여 반환 또는 환수 조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는 일체의 민·형사상 법적 책임은 사업자에게 있다.

나. 지적재산권의 책임

-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한 제안내용 등이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관리하며 향후 지적재산권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사업자에게 일체의 책임이 있다.

다. 사업운영

- 사업자는 본 사업의 추진현황 보고와 방법, 일시 등에 대하여 재단의 요청에 따라 수행한다.
- 재단은 중요한 사안의 결정을 위하여 회의를 소집하거나 자문을 받도록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고 사업자는 이에 대한 회의 및 자문결과를 보고서로 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3. 기타 계약사항 등

- 계약의 체결과 이행은 행정자치부 기준에 따른다.
 - 협상 상의 의무는 상기 기술한 사업내용과 사업관리의 전 내용을 포함한다.
 - 사업자가 협상 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이 성립되지 않으며 의무이행 입증의 책임은 사업자에게 있다.
 - 재단과 사업자 양측은 업무수행 과정이나 업무수행이 완료된 후 업무를 통해 입수하거나 교환한 기밀(민감)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사전 승인 없이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 끝.